

14. 보증규정중개정규정

자료제공 : 주택사업공제조합

개 정 이 유

최근 조합의 경영개선방안이 검토진행중에 있어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조합원의 추가출자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조합 경영개선방안이 확정되어 새로운 보증제도를 시행시까지 한시적으로 분양 보증에 한하여 출자지분액의 46배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이 추가출자부담없이 현행 출자범위내에서 원활한 주택건설사업이 가능하도록 보증규정을 개정함.

주 요 내 용

가. 개별보증한도에 불구하고 분양보증에 한하여 출자지분액의 46배를 초과하여 보증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6항)

나. 46배를 초과하여 분양보증을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 그 추가 이용분에 대하여는 현행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분양보증 수수료의 1.5배를 징수토록 함. (제 15조제7항)

다. 분양보증한도확대는 새로운 제도 확정전까지 분양보증신청서가 영업점에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토록 함(부칙 제2항)

보증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양보증 수수료의 1.5배를 징수한다.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에 불구하고 분양보증의 경우에는 출자지분액의 46배를 초과하여 보증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관련 정관변경(안)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보증을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 그 추가 이용분에 대하여는 제3항에 의하여 산출된

② (분양보증한도확대의 한시적 운용) 제7조제6항은 새로운 제도 확정전까지 영업접수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7조 개별보증한도 ①~⑤ (생략) (신설)</p>	<p>제7조 개별보증한도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불구하고 분양보증의 경우에는 출자지분액의 46배를 초과하여 보증할 수 있다.</p>
<p>제15조 보증수수료 ①~⑥ (생략) (신설)</p>	<p>제15조 보증수수료 ①~⑥ (현행과 같음) ⑦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보증을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 그 추가이용분에 대하여는 제3항에 의하여 산출된 분양보증 수수료의 1.5배를 징수한다.</p>

주택회보